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수신 [REDACTED]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귀하
(경유)

제목 소청심사 청구 결정 통지(2018-643 임상교원 신분전환 미승인 처분 취소 청구)

1. 귀하가 제기한 '임상교원 신분전환 미승인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18. 11. 21. 불임의 결정서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이 결정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임 결정서 1부. 끝.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김태연 사무관 윤창세 심사과장 이양주 교원소청심사 2018.12.3.
위원회 위원장 이근우

협조자

시행 심사과-16687 (2018. 12. 4.)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어진동,교원소청심사위원회)
<http://www.ace.go.kr>

전화번호 044-203-7426 팩스번호 044-868-8125 / ace02@korea.kr / 비공개(6)

결정서

사건 : 2018-643 임상교원 신분전환 미승인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소속 [REDACTED] 대학교 직위 부교수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강민정

피청구인 : [REDACTED] 대학교의료원장

심사일 : 2018. 11. 21.(서면)

결정일 : 2018. 11. 21.

피청구인이 2018. 8. 29. 청구인에게 한 임상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 9. 19.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2007. 3. 1. [REDACTED] 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임용기간: 2012. 4. 1.~2018. 2. 28.).

나. 청구인은 2017. 3. 1. 교수 승진심사에서 1차로 탈락하였고, 2017. 9. 1. 승진심사에서 2차로 탈락하였다.

다. [REDACTED] 대학교 의과대학장은 2017. 10월 청구인의 승진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을 제출받아, 2017. 11월 청구인의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승진 심



사)를 진행하였다.

라. ■ 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 19. 청구인의 승진 탈락(안)을 심의하였고, ■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 22. 청구인의 승진 탈락으로 인한 2018. 2. 28.자 면직(안)을 심의하였다.

마. 학교법인 ■ 학원은 2018. 1. 30. 청구인에게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여 퇴직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바. 학교법인 ■ 학원 이사회는 2018. 2. 6. 청구인의 면직을 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2. 13. ■ 대학교 의과대학장에게 승진 탈락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아. ■ 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2. 28. 청구인의 승진 탈락(안)을 재심의하였다.

자. ■ 대학교 의과대학장은 2018. 3. 2. 청구인에게 2018. 2. 28.자로 면직(재임용 거부)됨을 최종 통지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8. 3. 3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23. 학교법인 ■ 학원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결정하였다.

카. 학교법인 ■ 학원은 2018. 6. 27.(2018. 3. 1.자 소급) 청구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였다.

타. ■ 대학교 의과대학장은 2018. 8. 29. 청구인의 부교수 재임용 심사 탈락 시 의료원 임상교원 신분전환 미승인(임상교원 임용 거부)을 통보하였다.

파. 학교법인 ■ 학원은 2018. 8. 31. 청구인을 부교수 재임용 심사 탈락 및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분하였다.

2. 처분 사유

청구인은 2018.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으로서 2018. 9. 1.자 ■ 대학교 재임용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하는 경



우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2018. 9. 1.자 임상교원으로 신분전환하지 않기로(임상교원 임용 거부)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 3. 1.자 승진 탈락에 의한 면직통보’를 하면서 청구인을 2018. 3. 1.자로 임상교원으로 임용하였으나, 2018. 6. 27.(2018. 3. 1.자 소급) 청구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 후 2018. 8. 31. 청구인에 대한 ‘부교수 재임용 심사 탈락 및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처분’을 하면서는 임상교원 임용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1) 피청구인은 2018. 1. 30. 청구인에 대한 ‘승진심사 탈락에 따른 당연 퇴직 예정 통보’에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원하는 경우 2018. 2. 28.자로 당연 퇴직 후인 2018. 3. 1.자로 의료원 소속의 임상교원으로 신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 의료원 소속 임상교원으로 신분변경 시에는 사학연금은 탈퇴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기타 복무조건은 현재와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2018. 3. 15. 청구인에 대한 인사발령(신분 변경)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소속	부서	성명	직위		임용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동탄	정형외과	[REDACTED]	부교수	임상교수	2018. 3. 1.~2019. 2. 28.

이에 청구인은 2018. 3. 3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5. 23.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으며, 학교법인 [REDACTED] 학원은 2018. 6. 27.(2018. 3. 1.자 소급) 청구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27. 청구인에 대한 인사발령(신분 변경 정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소속	부서	성명	직위		발령일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동탄	정형외과	[REDACTED]	임상교수	부교수	2018. 3.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임교원 면직취소 결정

피청구인은 2018. 8. 29. 청구인에게 ‘부교수 재임용 심사 탈락 시 의료원 임상교원 신분전환 미승인(임상교원 임용 거부)’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8. 8. 31. 부교수 재임용 심사 탈락 및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분된 후, 위와 같은 임상교원 임용 거부 행위를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불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은 교원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자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3)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2018. 3. 1.자로 한림대학교 부교수에서 [REDACTED] 대학교 의료원 임상교원으로 신분 변경(계약기간: 2018. 3. 1.~2019. 2. 28.)되었으나, 2018. 5.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8. 6. 27.(2018. 3. 1.자 소급) 신분 변경 정정(임상교원→부교수)되어 임상교원 신분이 소멸된 점, ② 임상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혹은 「사립학교법」 등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임용권자에 대하여 임상교원 임용을 신청할 수 있거나 임용권자에게 임상교원 임용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REDACTED] 대학교 「의료원 임상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임상교원’이라 함은 한림대학교와 관계없이 의료원에 임용된 교원으로서 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서 주로 진료 및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상교원은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이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교원이 재임용 심사 탈락 및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치분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 하면 곧바로 임상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갖는다거나 임상교원 임용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상교원 임용 거부 행위’는 행정청의 거부 처분(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1.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이근우 이근우

위 원 손종학 손종학

위 원 지희순 지희순

위 원 오행자 오행자

위 원 우찬제 우찬제

위 원 이종근 이종근

위 원 정현미 정현미

위 원 한범수 한범수



위 정본임.

2018. 12.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원회원장

